

출판유통심의위원회

- ◆ 제 목 : 도서 사재기 마케팅 대행사 고발 조치 알림 및 사재기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 ◆ 수 신 : 출판사 및 출판단체
- ◆ 발 신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 ◆ 문서번호 : 2024-06
- ◆ 발송일자 : 2024.10.25.(금)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제22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공문을 통해 두 곳의 출판사에서 각 5종의 도서를 온라인 서점 회원ID를 사용하여 자사 신간 도서를 구매하고 홍보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구매 하게 하여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출판사를 형사고발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2024년 5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린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 위원회는 위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2024년 10월 16일 해당 출판사 행위에 가담한 홍보마케팅 대행업체 두 곳을 사재기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대행업체 역시 출판사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고 해당 출판사의 도서를 대리 구매하여 회원에게 발송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직접 구매한 회원에게 도서 대금을 정산하는 행위를 통해 사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 위원회는 현재 시장에서 마케팅 회사를 통한 대리구매로 베스트셀러 집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사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판매량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홍보마케팅 회사를 형사고발 하는 등 추후 발견되는 출판법 제23조 위반 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출판사에서는 위와 같은 유사한 방식의 사재기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금번 마케팅 대행사 형사고발을 계기로 독자들에게 양서가 주목받는 건전한 출판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출판인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위원장

